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3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7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16명(6급 1명, 7급 11명, 8급 2명, 연구관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나. 국립중앙극장에 무대예술지원센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함.

다.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연구실 안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라.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함.

마.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

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중요 출토유물 조사·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함.

바. 공능유적본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함.

사. 해양경찰정비창에 노후화된 소형 예인정을 대체하여 건조되는 중형 예인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2. 3. ~ 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87명”을 “28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5명”을 “9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24명”을 “125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24명”을 “628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03명”을 “20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18명”을 “220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해양경찰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26명”을 “228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며, 해당 정원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제도혁신추진단	
연 락 처	(044) 205 - 2503